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-70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. 05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의결주문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른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규정이 일몰되어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이 조례의 목적·취지에 맞게 표현하기 위하여 개정함.

3. 주요내용

가. 인용 법령 변경 (안 제10조)

: 「조세특례제한법」 ⇒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

나. 중과세 부동산 감면 제외대상 범위 명확화(안 제16조)

다. 반복적 문구 지양 및 간소화 등

4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지방특례제한법」 제78조의3(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)
- 2)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1조의2(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)
- 3) 지방특례제한법」 제177조(감면 제외대상)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20. 4. 23. ~ 5. 13. 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: 해당없음
- 3)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- 4)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해당없음
- 5) 제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20. 5. 19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38조제4항제1호”를 “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8조제4항제1호”로 한다.

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재산에 대하여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1조의2제4항 및 제5항”을 “부동산에 대하여는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”로, “기준일로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하고”를 “기준일부터 7년 동안은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”로, “3년간”을 “3년 동안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1조의5제3항”을 “법 제78조의3제12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은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
2.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감면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

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92조의2제1항”을 “법 제92조의2제1항”으로 한다.

제16조 중 “「지방세법」 제13조제5항에 따른”을 “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”으로 한다.

제18조 후단 중 “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184조”를 “법 제184조”로 한다.

제19조 중 “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180조”를 “법 제180조”로 한다.

제19조의2 중 “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177 조의2제3항”을 “법 제177조의2제3항”으로, “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177조의2제1항”을 “법 제177조의2제1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) 제10조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)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를 100분의 50으로 경감한다.</p> <p>제10조(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)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1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용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일로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하고,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 다만,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가 징수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가 징수한다. <단서개정 2011.12.30></p> <p>1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 본문에 따른 감면은 사업개시일</p> <p>2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 본</p>	<p>제2조(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)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8조제4항제1호-----.</p> <p>제10조(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) -----</p> <p>----- 부동산에 대하여는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--- -----</p> <p>----- 기준일부터 7년 동안은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-----</p> <p>--- 3년 동안은 -----</p> <p>-. ----- 법 제78조의3제12항---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은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</p> <p>2.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감면은 부동산을 취득한</p>

문에 따른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

제14조의2(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) ①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.

- 1. · 2. (생략)
- ② (생략)

제16조(감면 제외대상)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「지방세법」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.

제18조(감면자료의 제출)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1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9조(중복감면의 배제)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.

제19조의2(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

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

제14조의2(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) ① 법 제92조의2 제1항 -----

-.

- 1. · 2. (현행과 같음)
- ② (현행과 같음)

제16조(감면 제외대상) -----
----- 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-----
-----.

제18조(감면자료의 제출) -----

----- 법 제184조-----
-----.

제19조(중복감면의 배제) -----

----- 법 제180조-----
-----.

제19조의2(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

의 배제)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177 조의2제3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177조의2제1항 단서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의 배제) 법 제177조의2제3항--

----- 법 제17
7조의2제1항 -----

-----.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별도 비용발생 없음

4. 작성자 : 기획재정국 세무1과 차현숙 (☎ 3153-8715)